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통

## 119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노사발전재단(☎02-6021-1167,1187),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

###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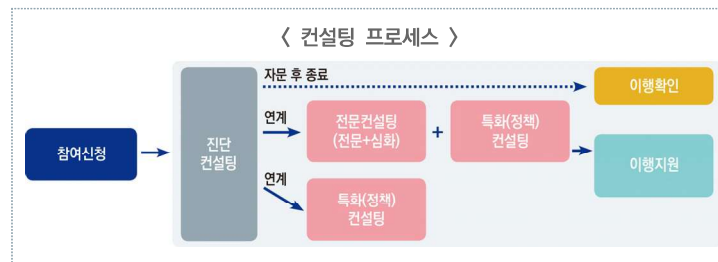
-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 ❖ '일터혁신'이란?

-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①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와 ②근로 여건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을 의미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 (컨설팅 유형)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진단·전문·특화로 구분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 ■ 컨설팅 신청

- 희망 사업장이 일터혁신 플랫폼에 접수(www.kwpi.or.kr)

### ■ 컨설팅 분야

-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컨설팅 분야 지원
  - 단, 기업규모 및 참여 횟수 등에 따라 일부 자부담 비용 발생

분 야	요 구 사 항
근로시간(2)	①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 ② 근무체계 개편(일가정양립 포함)
임금체계(2)	③ 임금관리체계 구축, ④ 임금체계 재설계
근로자 참여 및 협력(3)	⑤ 노사협의회 활성화, ⑥ 노사파트너십 증진방안 마련, ⑦ 참여적 혁신활동
직장문화(2)	⑧ 일가정양립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⑨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직무역량(2)	⑩ 학습체계 기준 수립 ⑪ 학습체계 설계
조직관리 및 평가(3)	⑫ 직무분석 및 업무정의, ⑬ 업무기능 개선, ⑭ 평가체계 설계(보상·배치·성과)
차별개선·원하청상생(2)	⑮ 차별없는 일터 조성 지원, ⑯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공정채용(2)	⑰ 채용제도 진단 및 개선 ⑱ 채용제도 마련 및 운영지원
장년친화(1)	⑲ 장년친화 인사제도

## 120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노사발전재단(02-6021-1000)  
웹사이트 홈페이지(<http://www.AA-net.or.kr>),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AA-ne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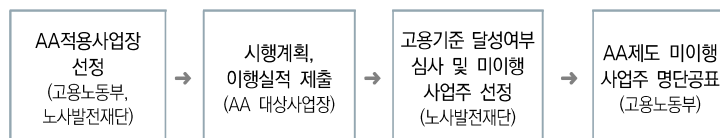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민간기업·공공기관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남녀 고용평등 촉진('06년부터 시행)

### ■ 사업내용

- (대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500인 이상 사업장\*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 (내용) 대상사업장의 직종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규모별(1,000인 이상, 미만), 산업별 30개 부문의 평균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과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 산정
  - 각 부문 평균치의 70% 미만 사업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 사업주에 대하여는 매년도 명단 공표

### ■ 사업추진체계



## 121 ▶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개요

-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 ■ 주요 내용

#### 〈고용상 성차별〉

- 차별 개념\* 명시(제2조제1호)
  -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차별 금지 명시(제7조~제11조)
  - (모집과 채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금지 및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금지 의무(제7조)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제8조)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 차별 금지 의무(제9조)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 금지 의무(제10조)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년·퇴직 및 해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 금지 및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 의무(제11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12조)
  -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제13조제1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제13조제2항)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제13조제3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14조제1항)
-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할 의무(제14조제2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제14조제4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제14조제5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는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들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제14조제6항)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금지(제14조제7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참고자료

- 고용상 성차별 근절을 위한 설명자료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20.8월)
- 사업장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4.1월)

## 12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개요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 ■ 주요 내용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1항)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3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4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제76조의3제7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 ■ 참고자료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조사·조치 및 사업장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3.4월) 참고

## 123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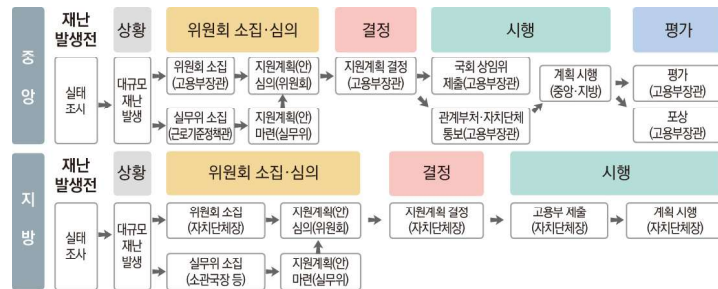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사업목적

-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
  -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

### ■ 사업내용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 (구성) 고용노동부장관(위원장),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협의회·노사단체 추천인사 및 관련 전문가 등
  - (심의사항)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실태조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 파악
-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 124 ▶ 근로자 파견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의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 파견 대상 업무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32개)
  -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직접고용의무

-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아울러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행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32개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 업무 제외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업무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하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 기사 업무 제외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 제외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 제외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제외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참고 근로유형

■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제법 시행(’07.7.1.) 이후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 】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 ※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 도급인 소속 근로자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근로자
  -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핵심은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임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하도급거래’의 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사용 종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택배기사, 골프장캐디,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 125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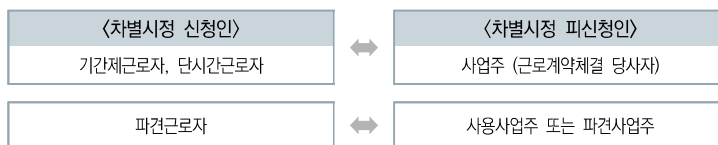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개요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됨
  -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요구를 통해 차별적 처우 시정

###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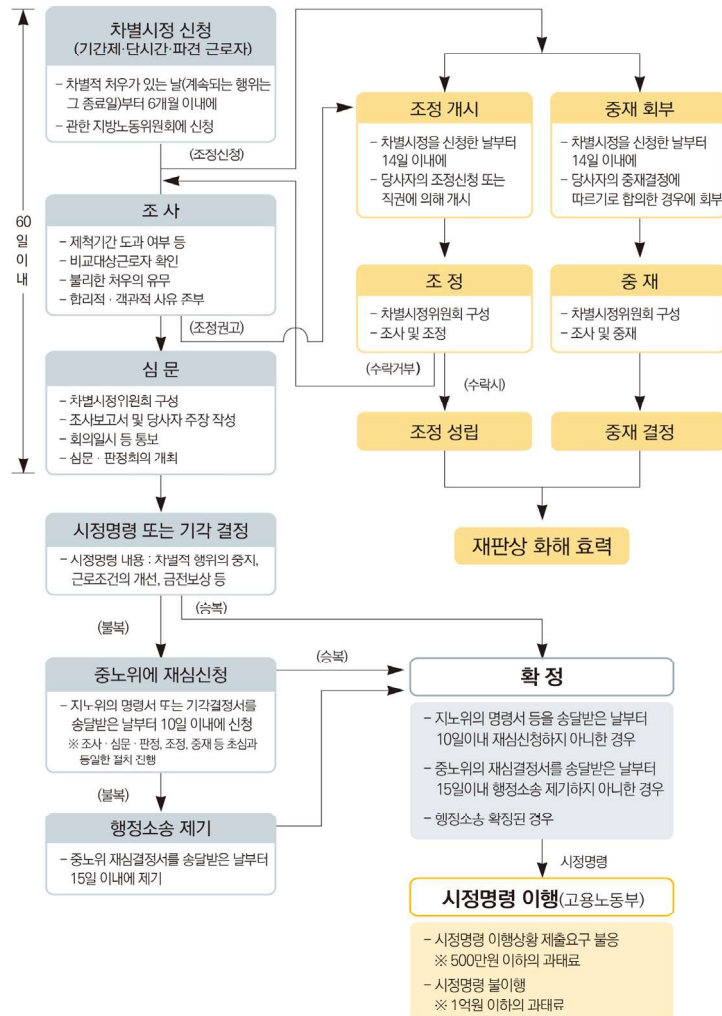
-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차별 관련 분쟁 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 (시정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시정요구)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고용 노동관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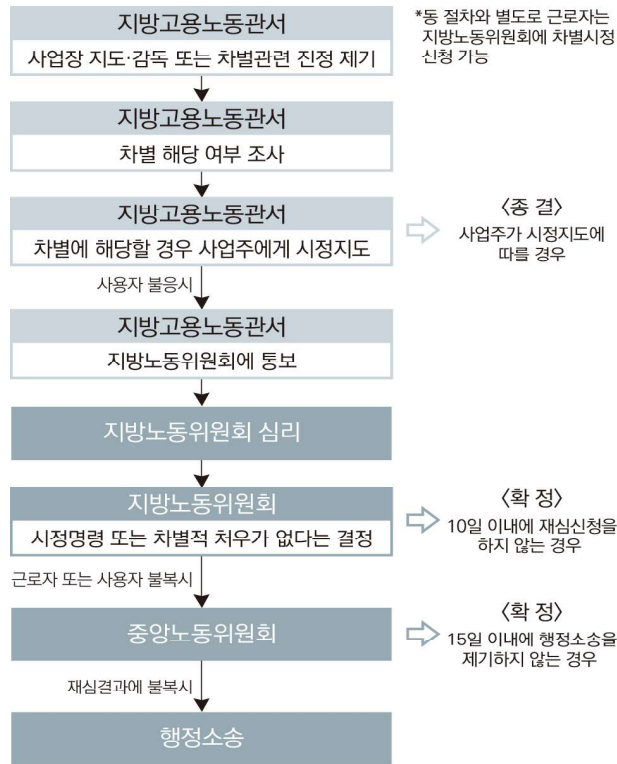
### ■ 신청기간

-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근로감독관을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 126 ▶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노사발전재단(☎ 02-6021-1106),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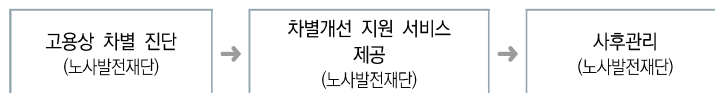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 ■ 사업내용

- '25년 목표: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점검 및 자율적 개선 지원
  -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23.12.)
-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예방교육·상담) 사업주·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차별예방교육 실시, 근로자 대상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권리구제 지원
  - (홍보) 차별인식개선 캠페인, 우수사례 발표회 등 홍보 활동 수행

### ■ 사업추진체계



## 127 ▶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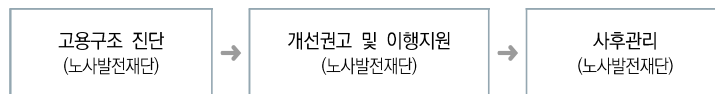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사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 지원 및 법 위반의 사전 예방

### ■ 사업내용

- '25년 목표: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
  - \*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1)
- 지원대상: 사내하도급 사업장(원청 및 하청)
- 지원내용
  - 적정임금 보장·근로자복지증진·직업능력개발·안전과 건강보호 등 사업장 실태 진단
  - 이중구조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적절한 개선방향 제시 및 이행유도 등
    - \* 불법파견·차별처우 등 법 위반 소지 확인 및 개선 안내 포함

### ■ 사업추진체계



## 128 ▶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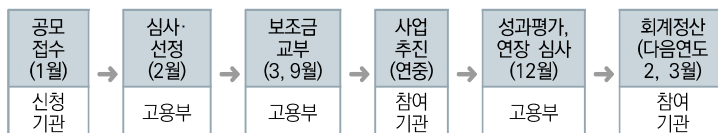
- 노무제공자 등 노동약자의 노무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컨소시엄), 자치단체, 협회·유관단체 등에서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최대 50%(3억원 한도)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자치단체, 기업(컨소시엄), 노무제공자 관련 협회·유관단체
- (지원내용) 신규 일터개선 사업 소요 경비의 최대 50%(최대 3억원)
- (지원기간) 기본 1년, 성과평가 후 기업 2년, 자치단체 1년 연장지원
- (사업공모) '25.1월 신규 참여기관 모집 공고(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유형) 아래 3가지로 구분

구분	내 용
쉼터	• 휴게 및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확대) 및 운영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가사·돌봄종사자 등)
복지 지원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복지편의제공사업 등 (예: 공동세탁(업종 특화 세탁 포함) 서비스, 가사·돌봄종사자 예방접종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여가·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등) • 여건 개선 물품지원 (예: 휴대용 안심벨 등)
기타	• 기타 노동약자 노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 사업추진체계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

통

## 129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Ⅰ 개요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25.10.23. 시행)

### Ⅱ 주요내용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 1년간 부과
  - 상습체불사업주
    - 직전 연도 1년간 ①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경제적 제재 종류
    - 신용제재(대출·이자율 산정 등 불이익)
    -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 공공입찰 불이익
  - 적용 방법: 직전 연도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체불을 대상으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경제적 제재 부과
    - \* (소명기간) 법에서 정한 소명기간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제재 부과 제외
    - \* (시행초기) 법 시행 후 '25.10.23.~12.31.확인한 체불로 '26년 상반기 최초로 결정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되며,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또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 (적용례) 법 시행 후 명단공개가 결정된 사업주부터 적용
-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체불임금의 3배 이내) 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요건
    - ①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③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130 ▶ 최저임금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개요

-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 적용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 (수습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결정방법

-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 < 최저임금 현황 >

(단위: 원,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간급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9,860	10,030
인상률	6.1	7.2	7.1	8.1	7.3	16.4	10.9	2.87	1.5	5.05	5.0	2.5	1.7

### ■ 산입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아래의 임금
    -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유급휴일·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 131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개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 ■ 주요 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명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 내역

### ■ 교부 방법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자로 교부할 수 있음
  - 사내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것도 가능
- 임금명세서 법정 서식은 없고, 법령에서 정한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면 사업장에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돋보기」) 배포
- 임금명세서는 재직자 기준으로 임금정기지급일에 교부하여야 함
  - 임금정기지급일 이전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 작성 방법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고정적인 기본급의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일급제나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수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기재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공제액을 기재

### ■ 위반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횡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 있음(근로자 1명당·월별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30	50	100
·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	30	50

## 132 ▶ 대지급금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 ■ 사업목적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도산 대지급금	<지원 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 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퇴직당시 연령 항목</th> <th>30세 미만</th> <th>30세 이상 40세 미만</th> <th>40세 이상 50세 미만</th> <th>50세 이상 60세 미만</th> <th>60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임금</td> <td>220</td> <td>310</td> <td>350</td> <td>330</td> <td>230</td> </tr> <tr> <td>퇴직급여등</td> <td>220</td> <td>310</td> <td>350</td> <td>330</td> <td>230</td> </tr> <tr> <td>휴업수당</td> <td>154</td> <td>217</td> <td>245</td> <td>231</td> <td>161</td> </tr> <tr> <td>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td> <td colspan="5">310</td> </tr> </tbody> </table>	퇴직당시 연령 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퇴직당시 연령 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비교: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사업명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간이 대지급금	· 1인당 최대 지급액(임금 3개월분+퇴직급여 3년분) (단위: 만원)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최대 금액	1,320	1,860	2,100	1,980	1,380
	<b>&lt;지원 요건&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li> <li>-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li> </ul> </li> <li>·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li> <li>-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li> </ul> </li> </ul>					
	<b>&lt;지원 범위&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li> <li>·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li> </ul>						
<b>&lt;상한액&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li> <li>· 재직자: 700만원</li> <li>* 재직자 대지급금 회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li> </ul>						

### 133 ▶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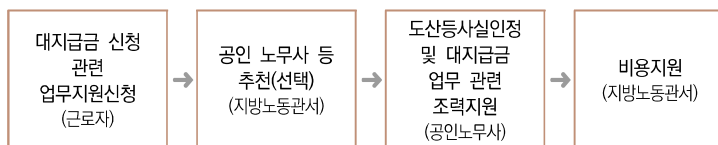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대지급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작성 등

#### ■ 사업내용

- 영세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비용 지원
- (지원대상)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
  -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조력지원 공인노무사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 1명당 6만원(사업장당 한도 300만원)

#### ■ 사업추진체계



## 134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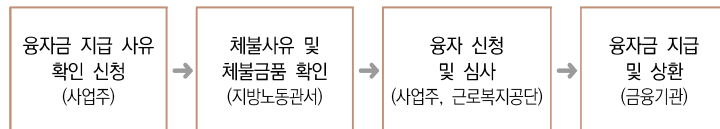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업주)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가동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사업장)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 지원내용(상한) :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1억5천만원 상환
- 용자상환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분할상환
- 용자금리 : (담보) 2.2%, (신용보증) 3.7%

### ■ 사업추진체계



## 135 ▶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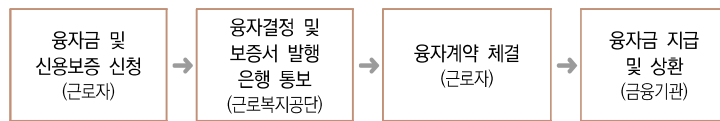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
  -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용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용자 제외
- 지원내용
  -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 용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용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 사업추진체계



### 136 ▶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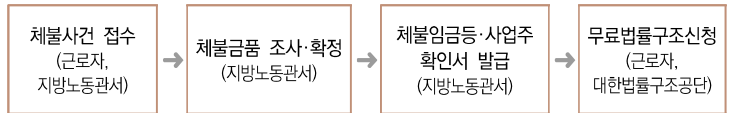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 ■ 사업추진체계



#### ■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유채동산 가압류: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 137 ▶ 퇴직연금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개요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 '23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382.4조원, 가입자 714.4만명(가입률 53.0%), 도입 사업장 43.7만 개소(도입률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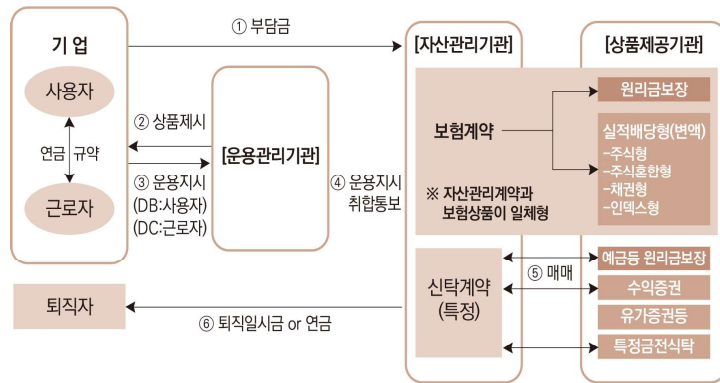
###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

- (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 (제도 운영)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참고** 한눈에 보는 퇴직급여(연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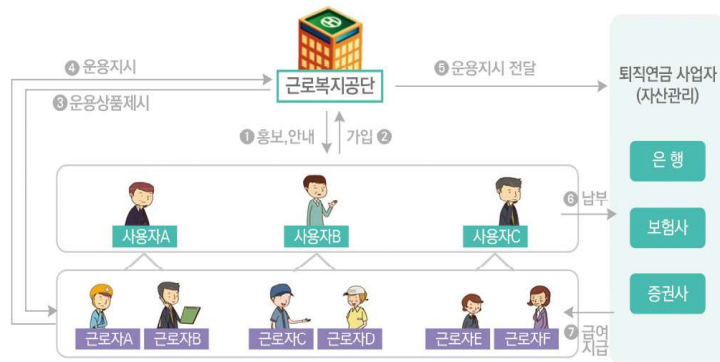
구분	퇴직급여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특례)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퇴직금 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① 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 공무원 사정업무 등 소득이 있는자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도별 납입 부담금수준	-	금년 기준책임준비금 - 전년 기준책임준비금	.			.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가입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적합 사업장 및 근로자	임금상승률 높고, 도산위험낮은 사업장	임금상승률 높고, 관리능력 갖춘 사업장	체불위험 높거나 이직, 연봉제가 많은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업주-근로자 각각 사업주 부담금의 10%(월 273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해당없음

### 138 ▶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운영

-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 (사업내용) 제도설계, 규약작성·신고 지원, 가입자교육, 운용지시 전달 등 운영관리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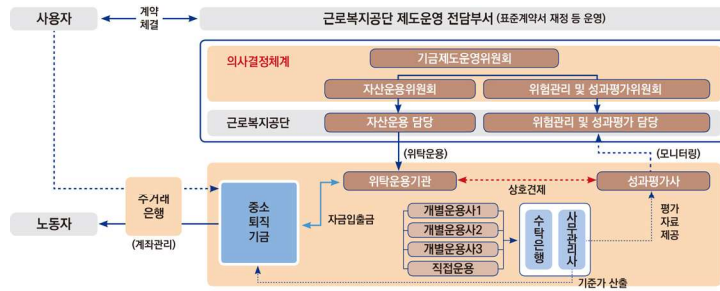
### 139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pension.comweil.or.kr)

#### ■ 개요

- (사업개요)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사업대상)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 (제도설정)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 \* (가입절차 간소화) 표준계약서 체결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 (부담금 수준 및 납입)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계정(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 (재정지원 및 수수료)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도입· 정착되도록 재정지원
  - \* (재정지원) 저소득근로자(월 273만원 미만)를 고용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각각 최대 30명)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의 10%(단, 가입자별 연간 한도 27만 3천원)
  - \* (수수료 감면) '25년 가입 사업장은 가입시 부터 3년간 면제

〈 중소기업퇴직기금 체계도 〉



### ■ 개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
-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출연액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 자율적 결정,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임의로 현금·주식 등을 출연가능
- (기금운영) 노·사 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 (사업재원)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최대 90%,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200만원 이상이고 일정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 받은 업체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이상 30%이하 범위
- (기금의 용도)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등
  -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 세제혜택

- 사업주: <sup>1)</sup>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sup>2)</sup>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 근로자: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sup>1)</sup>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sup>2)</sup>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 141 ▶ 근로복지기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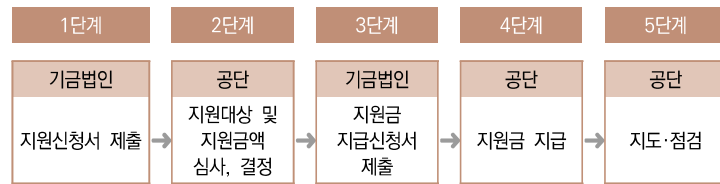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 ■ 지원 대상 및 수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근로 복지기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li> </ul>
공동근로 복지기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금액의 100%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li> <li>*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금액의 100% 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li> <li>*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li> <li>※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금액의 100% 내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li> <li>*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li> <li>※ 상생협약 체결 시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li> </ul>
<p>* (1인당 지원한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21-)</p> <p>* (공동기금 매칭 지원을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을 차등화('22-)                  → ① 자원배제, ② 신청금액의 50%, ③ 75%, ④ 100% 이내</p>		

### 사업추진체계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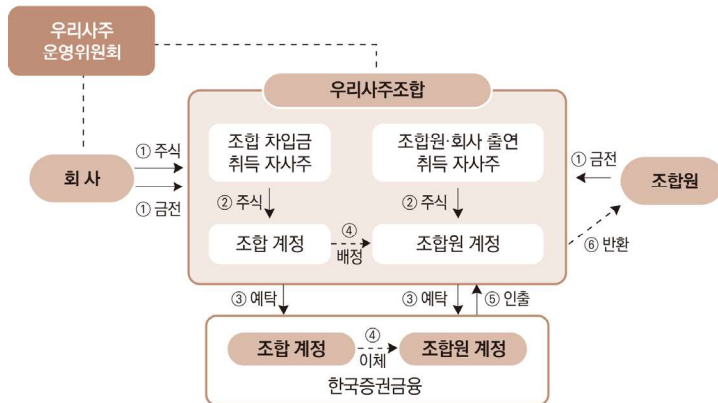
## 142 ▶ 우리사주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02-6908-8401)

### Ⅰ 개요

-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 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 Ⅱ 운영체계



취 득 방 법	배 정 방 법
· 조합원출연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회사·대주주 등의 무상출연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 회사·주주·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 세제혜택

- 사업주: 우리스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조합원: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 1,500만원)을 소득공제  
→ 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
  - 과세이연: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의무예탁기간 종료 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보유기간별 비과세혜택
  - 2~4년 미만 보유: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75% 비과세
  - 6년 이상 보유: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해당)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 143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 ■ 사업목적

- 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전문가 상담 무상제공

#### 〈상담분야〉

직장	개인	가족
① 직무스트레스	⑦ 성격진단	⑬ 부부갈등
② 조직 내 소통능력	⑧ 스트레스관리	⑭ 자녀양육
③ 업무역량 강화	⑨ 정서문제	⑮ 기타
④ 불만고객응대	⑩ 건강관리	
⑤ 일가정양립	⑪ 대인관계	
⑥ 직장 내 괴롭힘	⑫ 자살	

#### 〈상담방법 및 이용 가능횟수〉

구분		대 상	지원내용	이용기준	
개인	온라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15개 분야 심리상담	1인당 연 7회 회당 50분 이상 (계시판 상담은 횟수 제한 없음)	
					계시판 상담
					단문 상담
					전화상담
	오프라인	근로자			
기업	온/ 오프라인	교육 및 특강 (집단프로그램)	15개 분야 집단교육·상담	1사당 연 3회 회당 60분	

## ■ 사업 추진절차

		회원가입	컨설팅 신청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진행	만족도 평가
EAP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① 상담유형 ② 상담분야 ③ 상담사 선택	상담사가 전화 연락 상담일정 협의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회당 50분)	상담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회원가입 (개인·기업)					

## 144 ▶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 ■ 사업목적

-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양육 등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 ■ 융자대상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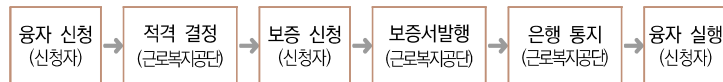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종 류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노부모부양비 ⑤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 이하 ('25년 252만 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⑥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이하 ('25년 252만 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융자 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 1,000만 원
	②혼례비	· 1,250만 원
	④노부모부양비	· 2,000만 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⑤자녀양육비	· 2,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 원(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⑥소액생계비	· 200만 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융자 금리	· 연 1.5%(변동 가능) ·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업종 우대 지원

구 분	현 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 (생활안정자금) 252만 원 이하 (3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이하)	· (생활안정자금) 305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이하, 대상 요건 변동 가능)
용자 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용자 한도	· 총 2,000만 원 한도	· 총 3,000만 원 한도

### ■ 사업추진체계



## 145 ▶ 생활안정자금(용자)이차보전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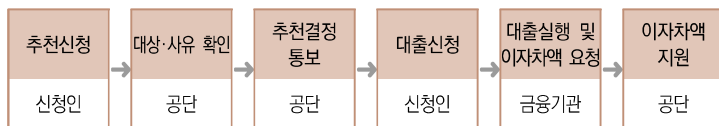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결혼, 자녀양육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가계안정 지원

### ■ 용자대상 및 조건

구분	내 용	
	대상 및 조건	
용자대상	·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용자사유	· 결혼, 자녀양육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용자한도	중위소득 2/3 이하	· 1,000만 원
	중위소득 2/3 초과 중위소득 이하	· 500만 원
	※ 기존 용자와 이차보전 용자 동시 이용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	
이차보전율	· 은행 대출금리의 3.0% 이내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심사기준	· 금융기관 대출심사 기준	
담보제공	· 개별 신용대출	

### ■ 사업추진체계



## 146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 ■ 사업목적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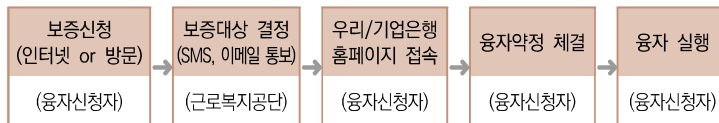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용자 등 보증대상 용자사업\*의 용자 대상으로 선정된 자  
\* (근복지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자, (고용기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기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임채기금) 체불근로자생계비용자

#### 〈 신용보증지원 제외 대상 〉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있는 사람
  -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내용: 각 용자사업 한도액으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증지원  
\* 용자 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9~1.0% 보증료 징수(용자금 지급 시 선공제)

### ■ 사업추진체계



## 147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 ■ 사업목적

- 휴양콘도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 및 그 가족의 여가 욕구 충족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

### ■ 사업내용

- 신청자격
  -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단, 평일에는 고용·산재가입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 및 사내 동호회장, 부서장 신청 가능
- 신청시기 및 선발
  - (주말·성수기) 이용희망월 전월 10일까지 신청, 이용희망일 전월 15일에 선발  
※ 월평균 소득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발
  - (평일) 이용희망일 7일전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7일이내 선발

### ■ 휴양콘도 신청절차



### 보유콘도 현황

콘도명	구좌수	평형	이용가능지역
계	682구좌	-	
한화	210구좌	26, 38평	설악,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에튼), 경주(담튼),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143구좌	19, 26평	설악, 흥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구좌	16, 21, 25, 26평	설악비치, 경주, 충주, 가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일성	78구좌	15~28평	설악, 지리산, 남한강, 제주, 경주, 무주
금호	45구좌	17, 27평	설악, 통영, 화순, 제주
리솜	34구좌	18, 24, 28평	안면도, 덕산
토비스	6구좌	17, 24평	제주
금강산	11구좌	16, 27, 30평	고성, 제주

## 148 ▶ 근로자 문화예술제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 ■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사업내용

- 참가자격
  - 근로자(해외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근로자, 산재 근로자 및 실직일부 6개월 이내인 자 포함)
  - 사업주(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산재가입 중소기업사업주, 가요·연극분야에 근로자와 함께 단체를 구성하는 사업주 포함)
    - \* 기성전문가 및 현직공무원 제외, 정부나 민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최한 대회 최고상 수상자, 각 분야 금상 이상 수상자는 동일 분야 참가 불가(타 분야 참가 가능)

#### • 참가 분야

가요	연극	미술	문학
독창 중창	기성극 창작극 뮤지컬	회화, 서예·캘리그래피, 디자인·공예, 사진(스마트폰 포함)	시, 소설(단편소설, 단편동화), 극작(희곡, 단편시나리오, 단편드라마), 수필

- 혜택: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 상장 및 상금



---

2025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산업재해 예방지원

통

## 149 ▶ 업종별 재해예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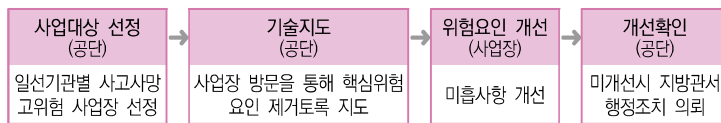
-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사고성 재해 관리, 화학사고 예방, 사업장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재해예방에 기여

###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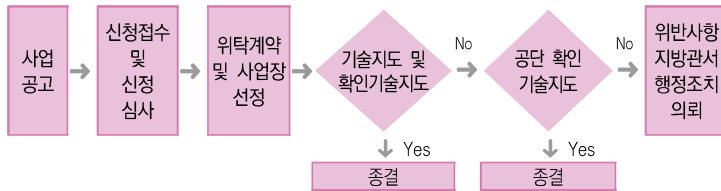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 재해통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공단의 기술지도 및 위험성평가 등 지원
- 민간 위탁 기술지도
  - 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또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사고사망 위험요인 개선 및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향상 유도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고위험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심사·확인
  -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및 고위험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 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역량·재정이 부족하여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려운 50인 미만 제조업 또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 등을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 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 지원

###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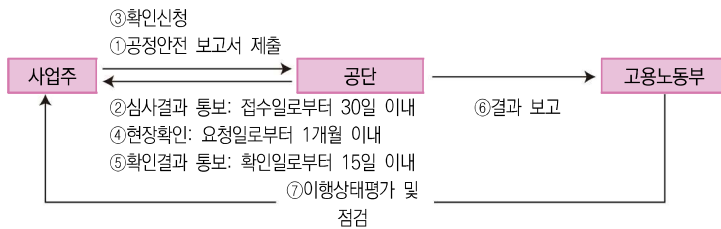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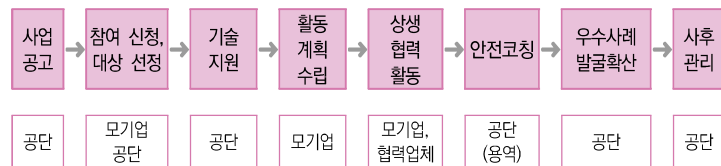
- 민간 위탁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 기타 사업: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 150 ▶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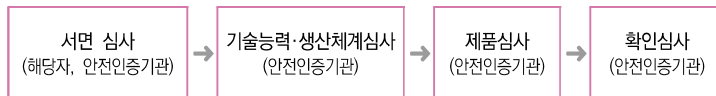
-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sup>1)</sup>, 자율안전확인 신고<sup>2)</sup> 및 안전검사<sup>3)</sup> 제도 운영

### ■ 사업내용

- (대상 설비) 안전인증 10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3종, 안전검사 13종
  - (안전인증)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자율안전확인신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인쇄기
  - (안전검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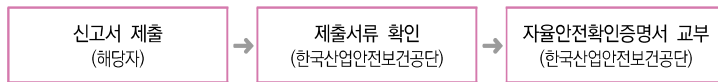
### ■ 사업추진체계(절차)

- 안전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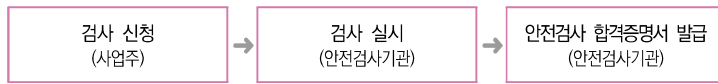


- 1)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2)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3)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 사업수행기관

기 관	업무범위			대표번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안전보건공단	전기종	전기종	전기종	154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	전기종 (단, 안전관리 수탁 사업장은 제외)	02-851-645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전기종	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	-			1577-7514

## 151 ▶ 유해작업환경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비용지원, 질식 위험 관리, 석면 등 유해인자 취급에 대한 기술지도 및 노출정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특고 포함)
- 지원내용
  -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
  - ▶ 석면 취급작업의 체계적 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 향상을 통해 석면에 의한 직업병 사전예방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 건강진단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직종 특성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 ▶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지원
    - 필수노동자 등 근골격계질환 다발 취약직종 유해요인 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Kit(손목·무릎보호대, 근골질환예방 테이프) 지원

## 152 ▶ 근로자 건강보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 사업목적

-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다양한 유해 인자에 대한 적시대응,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직업성질환의 업무관련성 규명, 안전보건서비스 기관의 신뢰성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정보관리를 통해 근로자 업무상질병 예방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특고 포함)
- 지원내용
  -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설치·운영
    -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 상담 등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전국 6개 권역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질병의 업무 기인성을 파악하고, 직업성 질병 발생 사업장의 유해환경 개선 및 고용부 재해조사 시 전문적 조언을 제시
  -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새롭게 발생하거나 인자별·시기별·지역별로 발생하는 산업보건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강화 유도
  - ▶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 장시간·야간근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심층 건강진단 및 집중관리를 통해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 ▶ 근로자 화학물질 노출정보 제공
    - 근로자가 취급하는 미지의 화학물질 유해성 및 노출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 ▶ 직업병 역학조사 및 안전보건서비스기관 정도관리
  -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근로자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 특수·진폐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를 통한 민간기관의 진단·분석 수준향상 및 신뢰성 제고
-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통보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관보 등에 공표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 MSDS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MSDS를 제출하고, 양도·제공 시 MSDS를 함께 제공하여 직업병 예방 및 사고 신속 대응 가능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사전승인을 받고 MSDS에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여 근로자 알권리 확보
- ▶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원
  - 질식 고위험·취약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예방 장비를 적시에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153 ▶ 산재예방시설 용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544-3088),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www.clean.kosh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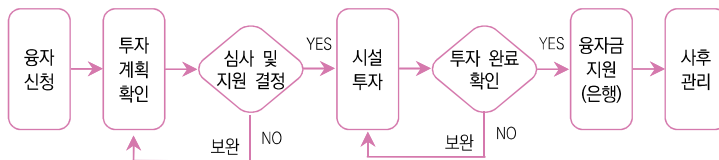
### ■ 사업 목적

-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산재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용자·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 조건: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고정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내용
  - 용자금 지원 신청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확인, 투자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 확인
  - 용자금 지원 대상자(우선순위)는 “용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사업 참여사업장 등 우선지원
  - 용자금 지원 이후 용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

### ■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 154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클린사업 대표번호(☎ 1544-3088),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안전일터 조성지원

#### ■ 사업목적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상시 50인 미만, 중기법상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등\*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 ①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산업재해 예방품목 등(홈페이지 참고)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교육 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등) 설치 비용 지원(최대 10억원)

- ②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 시스템 동바리, 고소작업대 임차료는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등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임차료(임차 및 구입비용)

③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보건 장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8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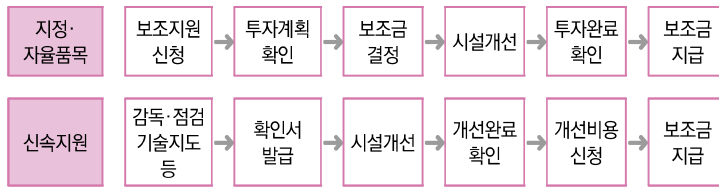
\* 지원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화학사고 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AI 화재감지기) 등 37종 및 자율신청품목(홈페이지 참고)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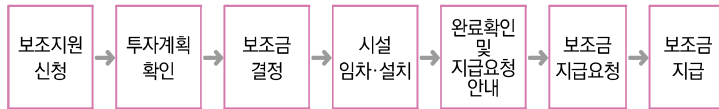
구 분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비율
제조 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	▶ 산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근로자 1명 이상)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지정한 품목 (지정품목) 또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신청한 품목 (자율신청품목) ▶ 고용부 감독·점검, 공단 기술지도, 민간위탁사업 및 체계구축 건설링 결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Quick-pass지원)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에 한함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지원비율 · (고위험) 소요비용의 70% · (스마트) 소요비용의 80%
건설 현장 산재 예방 안전 시설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 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 및 고소작업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금액: 같은 사업주당 9,000만원 까지 ※ 현장당 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가능)  ▶ 지원비율:소요비용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미만(65%), 50억원미만(50%) ※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수직보호망, 고소 작업대 임차료는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 안전일터 조성지원(고위험 개선, 스마트)



-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 ■ 안전동행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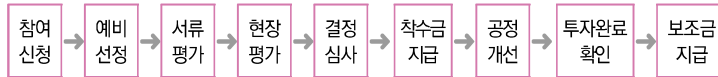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조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사업장 및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사내하청 제외)
  - 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최대 1억원)
  - ②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 지원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뿌리공장(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1·2차 배터리 관련 업종 * ①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 수제품및기타 제품제조업, ④ 식품제조업, ⑤ 목재및종이 제품제조업, ⑥ 금속제련업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내하청 제외)으로서 - 원청에서 하청의 공정개선 비용일부를 ① 직접지원 또는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 ③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공단 시행)을 통해 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내용	위험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지원 조건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 (최대 1억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건강일터 조성지원

■ 사업목적

- 급성중독 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및 폭염기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물품을 지원하여 근로자 건강보호
-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환경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재난예방 대책설비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으로 각 설비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등 공학적 설비: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 분진 취급 및 조리흙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서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
- 폭염예방 설비·시설 및 응급키트: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폭염재해 취약 사업장
- 온열환경 개선설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의 고열설비 등으로 온열 환경이 조성되는 실내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제외

### • 지원내용

구 분	국소배기장치 등	폭염재난 예방설비 등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품목	국소배기장치(조리흙 환기설비 포함) 발산원 밀폐설비	폭염예방 설비(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응급키트(쿨매트, 냉찜질세트, 식염포도당, 보냉 장구, 온습도계 등)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지원 비율	·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규모 이하: 공단 판단금액의 70% ·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 금액의 50%	· 폭염예방설비: 50인미만 공단 판단금액의 70% · 온열질환 예방 응급키트 등은 50인 미만 폭염 취약 사업장 배포	· 50인 미만(소기업이하) : 공단 판단금액의 70% · 50인 이상~100인 미만 :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한도	최대 5천만원 (단 조리흙은 최대 2천5백만원)	· 폭염예방설비: 최대 3천만원	최대 2천5백만원

\* 세부 지원기준, 지원품목 등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kosha.or.kr>) 참조

###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목적

- 중소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사고사망 감축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50인 미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 80% 지원

지원내용

- (지원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 안전시스템 등 31종\*

\* 자세한 품목은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참고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 155 ▶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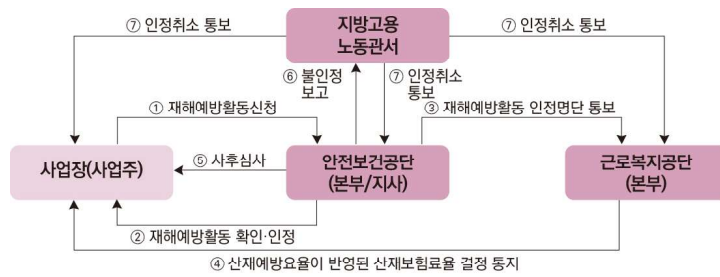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 ■ 사업내용

- (적용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10% 산재보험료 할인\*
  - \* ①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복 할인 적용
  - (재해예방활동 인정)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노동시간 조기 단축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21.6.30까지
- 산재보험료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10%
- 인정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법·제도 운영·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 (안전보건공단)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결정 및 통지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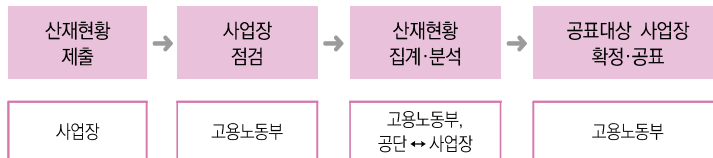
## 156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044-202-8812)

### ■ 사업개요

- (목적)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을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대상) 도급인의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업장

### ■ 사업 절차



### ■ 사업내용

- (사업장 점검·지도)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청업체 산업재해현황 파악 여부 등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
- (산재현황 집계·분석) 원청 사업장 제출자료를 산재현황DB와 연계하여 해당 원청별로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자 등 현황 집계·분석
- (확정 및 공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필요 시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심사), 최종 확정하여 대상 사업장 공표

## 157 ▶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 사업개요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도록 규정(산안법 제73조)

### ■ 사업내용

- 계약의 체결
  - (대상) 공사금액 1~120억원 건설공사 및 건축허가대상 공사 등
  - (주체)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
- 지도기관 지정 및 현황
  - (지정기준)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를 구분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시행령 [별표19])
  - (지도한계)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를 실시, 요원 1인당 지도 현장 수는 최대 일 4회, 월 80회 이내(시행령 [별표18])
    - \* 지도기관별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기관이 지정받은 지방청 관할지역으로 제한 (단, 전기·정보통신, 소방 분야는 최초 지정 인접 지역에 추가 지정신청 가능)
  - (지정현황) 총 547개소(법인: 287, 개인: 260/'24.12월 기준)

계	서울	충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47	75	192	66	52	73	89

- 업무수행체계
  - (건설현장) 발주자는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 등에 대해 확인·개선 권고
  - (고용부 및 공단) 기관지정, 기관평가 및 점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질 좋은 안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158 ▶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 사업개요

- 민간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추락 등 사고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작업 및 고위험 기인물 사용 현장에 대해 주요 위험요인 집중 확인·개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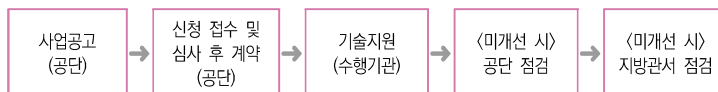
#### • (고위험 현장·작업)

- (현장) 공장, 축사시설, 주택, 근생시설, 창고시설, 아파트 관련, 토목
- (작업) 지붕 개·보수, 외부도장, 철거·해체, 리모델링, 인테리어, 옥상방수, 관로설치

- (고위험 기인물) 굴착기, 고소작업대(차), 이동식크레인, 비계(말뚝계 제외)

- (지원대상 1: 현장) 고위험현장·작업, 고위험 기인물 사용 현장
  - 고용부·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공단에서 인정한 현장도 기술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2: 본사) 지붕공사 등 전문건설업체 본사
  - 본사 지원 물량(4,800개소 이내)을 지붕공사 업체에 집중하고,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1억 미만 지붕공사 현장도 추가 발굴·지원
- (지원물량) 12만회(목표 사업장 수: 12만개소)

### ■ 사업추진체제



## 159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 사업목적

- 위험이 높은 공사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을 작성하고 사전에 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사 및 시공 중 이행상태 확인으로, 산재 예방

### ■ 사업내용

- (적용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산안법 제42조)

▲ 높이 31m 이상 건축공사 ▲ 3만m<sup>2</sup> 이상 건축공사 ▲ 5천m<sup>2</sup> 이상 다중문화시설 공사  
 ▲ 5천m<sup>2</sup> 병동·병장창고의 설비·단열공사 ▲ 50m 이상 교량공사 ▲ 터널공사  
 ▲ 10m 이상 굴착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전용댐 등

- (심사절차) 사업주는 전문가(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의견을 들어 계획서 작성, 안전공단 심사 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판정

\* ▲ (적정) 착공 가능, ▲ (조건부 적정) 착공 가능, 확인 단계에서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부적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착공 중지 또는 계획변경명령

- 동일 현장에서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또는 단위작업공사)가 있는 경우, 계획서 분리 제출·심사 가능

- (자체심사) 2년간 사망사고 미발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체심사업체로서 스스로 심사하여 심사결과만 공단에 제출

▲ ① 시공능력순위 1~200위 종합건설업체(토건), ▲ ②기업의 직전 3년간 평균산재를 이하,  
 ▲ ③ 안전관리전담조직 설치운영 ④ 산재예방활동실적 70점 이상,  
 ▲ ⑤ 8.1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 사망재해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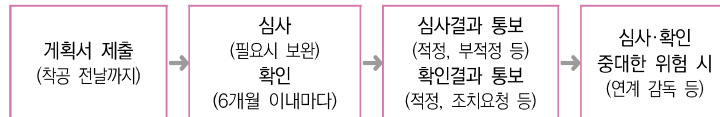
- 단,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부실한 안전관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즉시 배제('22.8월~)

- (이행점검) 계획과 실제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계획 변경 시 적정성,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점검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 안전공단의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경미한 위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지방관서 통보
  - 지방관서는 안전공단의 '작업중지 및 과태료' 요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처분 부과
- (확인주기) 6개월 마다 1회 이상 확인, 다만, 위험 공종 진행,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 집중관리\* 현장은 2~3개월에 1회 이상 확인
- \* ① 물류창고, ② 사망사고 발생업체 현장, ③ 안전관리 불량현장

### ■ 사업추진체계



## 160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 사업개요

- 건설 사업주가 일용근로자 채용시 지정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도록 함(법 제31조)

### ■ 사업내용

- (내용·시간) 총 4시간

과 목	내 용	시 간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사고 빈발 공사(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 소개</li> <li>• 거푸집, 갯폼, 붓칠 등 건설현장 용어 설명</li> </ul>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현장의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역할</li> <li>• 19가지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li> <li>* 지붕, 개구부 등 사망사고 다발 12대 위험요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 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li> </ul>	2시간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li> </ul>	1시간

\*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요인과 구체적인 안전수칙 중심의 교육 제공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및 표준교재 전면 개편('23년~)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국어, 미얀마, 베트남어 등 9개 국어 교재 번역

-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장기실업자(3개월 이상),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등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 근로자는 비용지원 참여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교육을 이수, 공단에서 교육 기관에 교육비(4만원) 대지급
    - \* 공단 ↔ 교육기관 계약에 따라 비용지원 이수생에게 추가비용 징수 불가
  - 교육기관 방문 또는 교육기관 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 161 ▶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 평가지표 홈페이지(const.kosha.or.kr)

### ■ 사업목적

- 건설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발급하여 발주자 및 원도급사의 수급인 선정 시 안전관리 역량 확인 유도

### ■ 사업내용

- (발급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체
- (산정방법) 전년도 사고사망자수를 집계하여 연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text{사고사망만인율}(\%) = \text{사고사망자수} / \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 상시근로자수는 건설업체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을 환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 (제공정보)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동종(종합, 전문) 건설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국내공사 실적액 등
- (발급방법)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 평가지표 홈페이지'(const.kosha.or.kr)에서 신청, 온라인 발급  
\*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자사 확인서에 한해 발급

####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활용방안

- ① 건설공사 계약 전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계약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에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요구
  - 건설공사발주자 → 원도급 건설업체    ▲ 원도급 건설업체 → 하도급 건설업체
- ② 요구받은 건설업체는 자사 확인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신청·발급
- ③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요구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 제출



## 산재근로자 지원

---

通

## 162 ▶ 산재보험제도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 개요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 ■ 적용범위

-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 (특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례를 통해 보호
  - \* 노무제공자(당연적용), 중소기업사업주·무급가족종사자(임의가입), 해외파견자(임의가입), 현장실습생(당연적용), 학생연구자(당연적용)
  - (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18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 \*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프리랜서,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 (중소기업사업주 등)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임의가입 가능
  -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자가 외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 (학생연구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 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에 고시
- (출퇴근재해 요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해 매년 요율 산정(소 업종 동일한 요율 적용)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종류	60	58	58	58	58	51	45	35	28	28	28	28	28	28
업종별 요율	평균	17.7	17.0	17.0	17.0	17.0	16.5	15.0	14.3	14.3	14.3	14.3	14.1	14.1
	최고	354	340	340	340	340	323	281	225	185	185	185	185	185
	최저	6	6	6	7	7	7	7	6	6	6	6	5	5
출퇴근요율	-	-	-	-	-	-	1.5	1.5	1.3	1.0	1.0	1.0	0.6	0.6

-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보험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 이상, 총공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 개별실적요율 조정기준
  - (원청 책임 강화)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사고사망자 수 고려) 산재보험료를 인하 사업장\* 중에서 보험 수지율 산정 대상기간 동안 ①직접고용 + ②하청 + ③파견 근로자 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인하비율 축소(40~100%)  
\* (대상) 500인 이상(건설업 60억이상)인 인하시업장

## 163 ▶ 산재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 목적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 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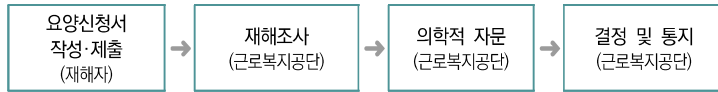
### ■ 급여 종류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
  - \* 최고보상기준: 1일 258,132원의 70%, 최저임금(1일 80,24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시 유족에게 지급
  -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 상시간병급여: 44,760원(전문) 41,170원(일반)
  - \* 수시간병급여: 29,840원(전문) 27,450원(일반)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 상병보상연금: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장례비) 산업재해로 사망시 장례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
  - \*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8,685,600원, 최저금액 13,451,380원
  - \* 선지급(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은 최저금액 지급 후 추후정산
-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애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기타 훈련은 600만원/연)
  -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80만원/월), 제4급~제9급(60만원/월), 제10급~제12급(45만원/월)
  -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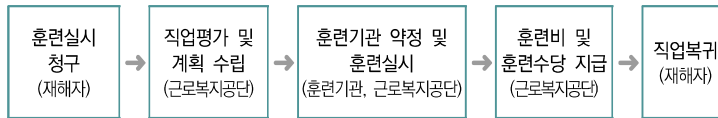
- (요양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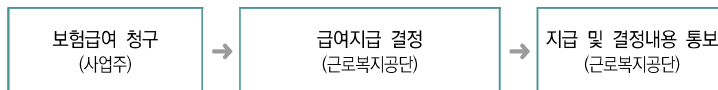
- (산재보험 급여청구)



- (직업재활급여: 훈련)



- (직업재활급여: 직장복귀지원금)



## 164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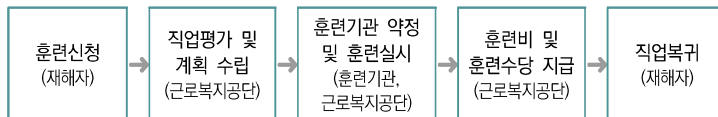
-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애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애인
- 지원내용: 산재장애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구분	내용
신청기간	장애등급판정일부터 3년 이내
훈련비용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 그 외 훈련: 6백만원 한도
훈련기간	최대 12개월
훈련수당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월 출석율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과정,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 사업추진체계



## 165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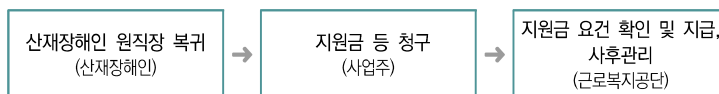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 사업추진체계



## 166 ▶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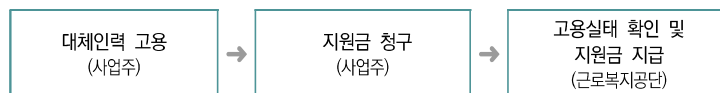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장해인 이나 요양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인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 지원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일까지 최대 6개월,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 ■ 사업추진체계



## 167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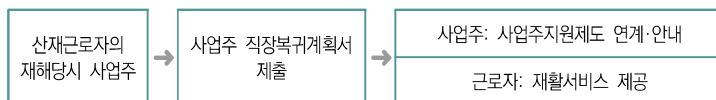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작성한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촉진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가 확인된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
-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지원제도(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를 연계·안내하고, 필요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지원
  - 근로자에게는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집중재활치료, 작업능력강화 훈련,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심리상담 등)를 제공

### ■ 사업추진체계



## 168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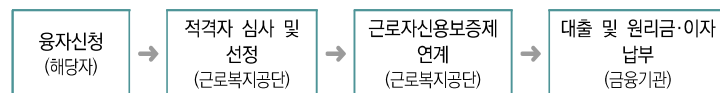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용자신청일 기준)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훈례비·장례비에 한정)
- 지원내용: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훈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각 1,500만원 이내
- 이자율 및 상환방법: 연리 1.25%,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 대상자 선정방식
  - 수시접수
  - ※ 재정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 ■ 사업추진체계



## 169 ▶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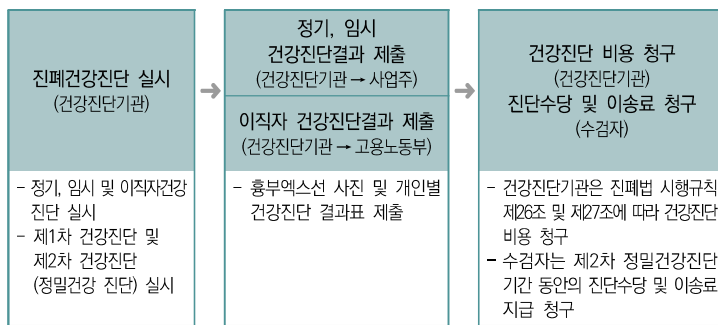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임시·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진폐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을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를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 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황석)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애급여가 지급된 광업
- 지원내용: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정기·이직자·정밀건강진단 비용) 및 부대비용(진단수당, 이송료) 지급
  - \* 진단수당 ; 1일당 50,000원

### ■ 사업추진체계



## 170 ▶ 진폐위로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 사업목적

- 진폐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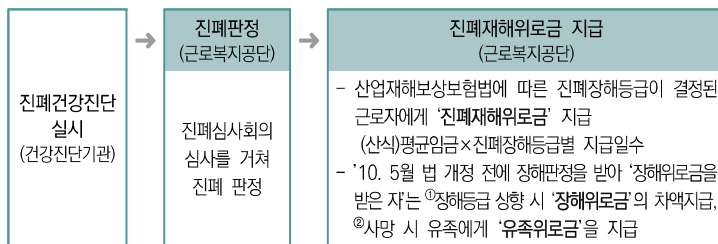
- 지원대상: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 지원내용: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진폐 근로자에게 진폐예방법 상의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와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진폐위로금을 지급

\*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 제1급(1,040일) ~ 제13급(215일)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 ■ 사업추진체계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 ('25.1.1.)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250만원) 및 사후 지급 방식 폐지</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li> </ul>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25.2.23.)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기간 연장(최대 1년6개월) 및 분할 횟수 확대(3회)</li> <li>·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휴가 20일, 출산후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및 정부지원 20일로 확대</li> <li>·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6일) 및 정부지원 신설(난임치료휴가급여, 2일)</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대상 자녀 연령 12세, 최대사용기간 3년) 및 최소 사용기간 1개월로 개편</li> <li>·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li> <li>·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li> <li>·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 10. 1. 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 적용 대상 확대</li> </ul>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요건)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며, 지원수준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li> <li>①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li> <li>②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li> <li>· (지원기간, 주기)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3개월 단위 신청)</li> </ul>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 II 신설	“빈일자리 업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개편) 시행	·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720만원, 1년),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지원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	·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명확화	폭염 등과 같은 급격한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 폭넓은 보호	·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 명확화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 (참여조건) - (참여자) ①50대 이상, ②사무직 등 퇴직자로 경력전환 희망자, ③자격취득(또는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서 경력 쌓기가 필요한 자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 (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근로지원비용’ 신설	인적지원제도 중첩화에 따른 효율화 방안 마련	· 기존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 명칭을 근로지원 비용 지원으로 개정하여 제도 효율화 · 지원 대상을 신규채용 90일 이내인 중증장애인에서 직무전환, 배치전환 후 90일 이내인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
국민내일 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활성화 도모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 상향(100만원 → 200만원)
「사업주자격 인정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시행	사업주자격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시행	· (인정요건) ▲종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응시 자격의 체계화 여부, ▲인사 우대 규정 제정 여부, ▲비영리성 여부, ▲검정 운영 인프라 구비 여부, ▲출제·채점·감독 기준 구비 여부 등 · (인정절차) (기업) 인정 신청 → (인력공단) 서류 요건 확인 → (조사단) 조사 및 인정위원회 보고 → (위원회) 조사 결과 심의 → (인력공단) 인정서 발급 · (지원내용)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사용 권한 부여,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청년기술 채용사업 신설	빈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 기술연수 지원을 통해 선진기술 습득 훈련 기회 제공	· (운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제6호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 (연수대상) 빈일자리 업종 재직 2년 이상 청년 재직근로자 · (연수유형) 국내연수 · (지원내용) 훈련비,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 · (추진일정) 운영기관 모집공고(12월) → 사업 설명회(1월) → 운영기관 선발(2월) → 연수생 모집(3월) → 훈련시작(4월)
부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부리산업 분야 평균 빈 일자리 수는 2.5만개(*23.12.)로, 현장의 신속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훈련 플랫폼 확충	· 구축 캠퍼스 및 훈련분야: 폴리텍 남인천캠퍼스(기계·금속, 자동차·물류), 폴리텍 순천캠퍼스(철강, 기계, 석유화학), 폴리텍 포항캠퍼스(철강, 기계, 광물·금속), · 훈련과정: 지역인자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문식 훈련 형태로 운영 4주~6개월 등 훈련기간은 훈련내용과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인력·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 채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li> <li>* 최근 12개월 이내 ① 고용24(워크넷 포함) 알선 서비스 및 ② 플랫폼 사의 ATS 유료 서비스를 사용한 이력이 없고, ③ 신청일 현재 고용24에 가입된 사업주</li> <li>* 공정채용 컨설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등 우선지원</li> <li>· (지원금액)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 (최대 40만원) 지원</li> <li>· (지원내용)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검증된 ATS 서비스를 도입·활용한 이용기업에 사용료 지원</li> </ul>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li> <li>·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li> </ul>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용자) 이차보전 지원	한정된 자원 하에서,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근로자 지원 범위 확대 등 신규 용자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비용이 발생하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li> <li>· (지원한도) 500만 원 ~ 1,000만 원 범위</li> <li>·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li> </ul>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용자 종류 신설	용자 종류 확대(목적 다양화)를 통한 산재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종류에 '자녀양육비' 신설</li> <li>· (대상) 용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li> <li>·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li> </ul>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 도모를 위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매년 4월 28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li> </ul>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 추진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관리를 엄격히 하여 인정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 제고	· 인정심사 기준 강화(70 → 90점) · 모든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실시 · 인정사업장에서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취소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70% 지원 · 연간 단가계약 공사의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결 및 청년 취업 기회 확대	· (지원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II유형 청년 ('24.1.1. 이후 참여, '25년 취업자) · (지원규모) '25년 1.3만명, 228억원 · (지원내용) 직업훈련(1개월 이상) 수료 후 빈일 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지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도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과 연계하여 취업의지 고취 · 연계 소상공인에게 국민취업연계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 추가 지원(중기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

통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4541	02) 2231-0009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4541	02) 2231-0009
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코스모빌딩	06671	02) 580-4900
서울강남지청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06278	02) 584-0009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06192	02) 3468-4794
서울동부지청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0, 11층	05717	02) 403-0009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3~5층, 17층	05717	02) 2142-8924
성동광진고용복지*센터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1, 2층	04784	02) 2047-9900
서울서부지청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3, 5층	04157	02) 713-0009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플라자 1, 4, 5, 8층	04157	02) 2077-6000
서울남부지청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07262	02) 2639-2100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07262	02) 2639-2300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2, 3층	07526	02) 2063-6700
서울북부지청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01137	02) 950-9880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01762	02) 2171-1700
강북성북고용복지*센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136 풍양빌딩 2,3,6,8,10층	01161	02-3406-0900
서울관악지청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	08390	02) 3281-0009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1~3층	08378	02) 3282-92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4층	22101	032) 460-4545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21559	032) 460-4701
인천북부지청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21068	032) 540-7910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층	21060	032) 540-5641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4~8층 (원당동)	22865	032) 540-2001
강화고용복지센터	인천 강화읍 강화대로 395 준프러자 5층	23035	032) 540-7990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 석천로 207	14537	032) 714-8700
부천고용복지*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 뉴월드빌딩 (중동)	14530	032) 320-8900
김포고용복지*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3~5층	10083	031) 999-0900
의정부지청	경기 의정부시 총의로 143	11787	031) 877-0009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 1~2층	11674	031) 828-0900
포천고용복지센터	경기 포천시 중앙로62 (신읍동65-17) 1층	11149	031) 850-7690
남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빌딩 3~4층	12237	031) 560-1919
동두천고용복지*센터	경기 동두천시 심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11357	031) 860-1700
구리고용복지*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11921	031) 560-5800
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	11498	031) 849-2300
고양지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10497	031) 931-2800
고양고용복지*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10364	031) 920-3937
파주고용복지*센터	경기 파주 중앙로 328 MH타워 8층	10930	031) 860-0401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경기지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16324	031) 259-0204
수원고용복지*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2~4층	16483	031) 231-7864
용인고용복지*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엔플러스빌딩 2~4층	16977	031) 289-2210
화성고용복지*센터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85 이원타워 7층	18302	031) 290-0800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13627	031) 788-1505
성남고용복지*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13627	031) 739-3177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 (경안동)	12757	031) 799-2760
양평고용복지센터	경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11, 3층	12551	031) 740-6781
이천고용복지*센터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창전동)	17356	031) 644-3820
여주고용복지센터	경기 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 5층	12622	031) 740-6790
하남고용복지*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풍산동)	12919	031) 730-7000
안양지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14087	031) 463-7300
안양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타워 2~4층	14001	031) 463-0700
군포고용복지센터	경기 군포시 군포로 522, 5층	15855	031) 463-7610
광명고용복지*센터	경기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 1~2층 (철산동)	14216	02) 2680-1500
의왕고용복지*센터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2층 (포일동)	16004	031) 463-7460
안산지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15358	031) 412-1992
안산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15357	031) 412-6600
시흥고용복지*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 3층 (정왕동)	15049	031) 496-1900
평택지청	경기 평택시 교덕중앙5길 72	18008	031) 646-1114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평택고용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1,2층	17739	031) 646-1205
안성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2층	17596	031) 686-1705
오산고용복지*센터	경기 경기동로 51, 오산고용센터 (오산동)	18131	031) 8024-9805
강원지청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24233	033) 269-3551
춘천고용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24415	033) 250-1900
가평고용복지센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 1층	12413	031) 580-0901
홍천고용복지센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56 로하스빌딩 7층	25139	033) 439-1901
강릉지청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	25535	033) 650-2500
강릉고용복지*센터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 (교동)	25528	033) 610-1919
동해고용복지센터	강원 동해시 동해대로 4921 (나인동 156-7) KT북평빌딩 1층	25810	033) 539-1901
속초고용복지*센터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 (조양동)	24872	033) 630-1919
원주지청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	26387	033) 769-0800
원주고용복지*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6448	033) 769-0900
태백지청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26015	033) 552-0009
태백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2층 (황지동)	26015	033) 552-8605
삼척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5층	25929	033) 570-1900
영월출장소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6232	033) 374-0009
영월고용복지*센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6232	033) 371-626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47605	051) 853-0009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47209	051) 860-1919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0, 정우헤리티지빌딩 8층~10층 (하단동)	49426	051) 520-4900
부산동부지청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46332	051) 559-6688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광안동)	48267	051) 760-7100
부산북부지청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 (덕포동)	46938	051) 309-1500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코스모북부산빌딩 (화명동)	46524	051) 330-9900
창원지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28	51439	055) 239-6500
창원지청 별관 (지역협력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49, K빌딩 별관 2층	51504	055) 239-5300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미미서로 60 (상남동)	51503	055) 239-0900
마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3~6층 (석전동)	51316	055) 259-1500
함안고용복지센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경길 32 함안메디컬센터 4층	52040	055) 278-9210
창녕고용복지센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8 성동빌딩 9층	50323	055) 278-9250
울산지청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 (옥동)	44664	052) 272-0009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06	44717	052) 228-1919
양산지청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석산리)	50635	055) 387-0009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부원동)	50925	055) 330-6400
밀양고용복지*센터	경남 밀양시 백민로 69, 2층, 4층	50423	055) 350-2800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중부동)	50629	055) 379-2400
진주지청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번길 43	52629	055) 752-0009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2~5층 (장대동)	52755	055) 753-909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사천고용복지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9-1 (4층)	52517	055) 760-6590
하동고용복지센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52345	055) 884-8219
거창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6	50143	055) 949-6589
통영지청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53016	055) 650-1951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53016	055) 650-1800
고성고용복지센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75 (양강빌딩 5층)	52942	055) 650-1841
거제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6 우형빌딩 3층 (고현동)	53252	055) 730-19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42140	053)667-6200
대구청 지역협력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1 2층, 3층	42012	053)667-6013
대구청 부정수급조사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1 3층	42012	053)667-6014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범어동)	42020	053) 667-6000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태전동)	41462	053) 606-8000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대구 동구 아양로 22 (신암동)	41207	053) 667-6900
경산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산시 중앙로85 3, 4층 (충방동)	38622	053) 667-6800
영천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천시 금원로 63, 2층	38891	054) 778-2591
대구서부지청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42768	053) 605-900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내당동)	41857	053) 605-6500
칠곡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39890	054) 970-1919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42984	053) 605-9510
포항지청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대점동)	37761	054) 271-6700
포항고용복지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죽도동)	37751	054) 280-3000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울진출장센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7길 10	36324	054) 783-0841
경주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3층, 6층, 7층, 8층 (동천동)	38104	054) 778-2500
포항지청 지역협력과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3층, 5층	37751	054) 288-3500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2번길 8, 2층	37761	054) 271-6700
포항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2번길 8, 1층	37761	054) 271-6700
구미지청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임수동 92-31)	39390	054) 450-3500
구미고용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39281	054) 440-3300
김천고용복지*센터	경북 김천시 신양2길 46 (신음동 792-9)	39547	054) 429-8900
영주지청	경북 영주시 변영로 88	36088	054) 639-1111
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주시 변영로 88	36088	054) 639-1111
문경고용복지*센터	경북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 4층	36977	054) 559-8200
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상주시 왕산로155 대흥빌딩 1층	37212	054) 559-8280
안동지청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36643	054) 851-8000
안동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36643	054) 851-8061
의성고용복지센터	경북 의성군 문소3길 102-1, 4층	37337	054) 851-8150
예천고용복지센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봉덕로 26, 2층	36827	054) 851-818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2층, 4-6층	61011	062) 975-6200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21 (북동)	61240	062) 609-8500
나주고용복지센터	전남 나주시 이창1길 39,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58217	061) 280-0183
화순고용복지센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1층	58135	061) 280-0155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2~3층 (월곡동)	62328	062) 960-3200
영광고용복지센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61	57036	061) 280-0159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63219	064) 728-7100
전주지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인후동 1가)	55014	063) 240-3400
전주고용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54936	063) 270-9100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수성동)	56178	063) 530-7500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1층 (하정동)	55770	063)630-3900
익산지청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어양동 626-1)	54552	063) 839-0009
익산고용복지*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남중동)	54619	063) 840-6500
김제고용복지*센터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김제지역자활센터 2층 (요촌동)	54392	063) 540-8400
군산지청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 (조촌동 852-1)	54076	063) 452-0009
군산고용복지*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조촌동 752-4)	54079	063) 450-0600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북 부안읍 번영로 145, 2층 (서외리 3-1)	56308	063) 580-0501
고창고용복지센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30 고창선운사 빌딩 1층	56431	063) 580-0540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58691	061) 280-0100
목포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상동)	58748	061) 280-0500
해남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59037	061) 530-2900
무안고용복지센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안길 26	58524	061) 280-0160
영암고용복지센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암로 36, 1층	58418	061) 280-0190
여수지청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웅천동)	59691	061) 650-0108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조례동)	57966	061) 720-9114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웅천동)	59691	061) 650-0155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8~9층	57777	061) 798-19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둔산동)	35238	042) 480-6290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 서구 문정로 56 (탄방동)	35262	042) 480-6000
금산고용복지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70 KT금산지점 1층	32740	041) 731-8690
공주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4층 (신관동)	32584	041) 851-8501
논산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내동)	32989	041) 731-8600
세종고용복지*센터	세종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30026	044) 865-3219
청주지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분평동)	28798	043) 299-1114
청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월드피아오피스텔(사창동)	28575	043) 230-6700
진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진천군 자안로 9, 4층 402 ~ 403호(덕산읍)	27871	043) 229-0791
옥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옥천군 삼양로 91, 문화회관 별관 3층 (옥천읍)	29032	043) 730-4100
천안지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31107	041) 560-2800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빌딩 2~5층, 9층 (성정동)	31110	041) 620-7400
당진고용복지센터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2층	31769	041) 620-7456
예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1길 20 더예당 2층	32435	041) 620-9511
아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로 5, 충무빌딩 4층, 7층	31482	041) 570-55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충주지청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3-3	27428	043) 840-4000
충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 (문화동)	27428	043) 850-4000
제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도로 441 (화산동)	27184	043) 640-9310
음성고용복지센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로 213, 2층	27630	043) 880-8600
보령지청	충남 보령시 옥마로 42	33482	041) 931-6640
서산출장소	충남 서산시 쌍연남1로 37 (잠홍동)	31979	041) 661-5630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석남동)	31995	041) 661-5600
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36 태광빌딩 2층	32147	041) 661-5691
보령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33474	041) 930-6200
부여고용복지센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신동엽길 6, 3층 (성모크리닉센터)	33153	041) 930-6236
서천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109번길 25, 3층	33646	041) 930-6244
홍성고용복지센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7, 3층 (블란서빌딩)	32226	041) 930-6248
고객상담센터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44543	국번없이 1350
중앙노동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4층	30117	044) 202-8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07295	02) 3218-60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합동청사 4층	46332	051) 559-37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영통동961-2)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3층	16703	031) 259-50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2층	35208	042) 520-80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7층	61011	062) 975-6100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4층	42140	053) 667-65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 창원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47, 10층	51393	055) 239-80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6-7층	22101	032) 430-310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3층	24233	033) 269-34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5층	28798	043) 299-12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3층	55014	063) 240-160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 남구 두왕로 318, 4층	44740	052) 208-000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63219	064) 710-7990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	세종 법원로 82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	30148	044) 202-8499
최저임금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03호	30117	044) 202-84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11호	30117	044) 202-7912
고용보험심사관실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7호	30117	044) 202-7920

2025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

2025년 2월 발행

**발행** 고용노동부

**편집**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2-7053, 7055  
044)202-8022

**인쇄** 열림기획(주)  
044)868-5055

---